

「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건강증진과장)

가. 제안이유

금연구역 시설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행화하여 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활동 제한을 방지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평창군 금연지도원 1일(4시간 이상 근무) 활동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)
- 2)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금연지도원의 대우를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금연지도원 지도점검에 따른 활동수당을

기존 일 4만원에서 일 5만원 으로 인상하였고,

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지원을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